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2020.10 I Vol.5

동물자유연대 정책팀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2020.10 Vol.5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와 문제점

A. 지난 8일 진행된 2020년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사건의 급증에도 부실한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문제를 지적,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에 대한 개정을 약속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

B.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는 2010년 78명에서 2019년 973명으로 1,147% 급증. 사건의 증가 뿐 아니라 동물학대 유형 및 수법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 수사의 필요성 증가

C. 동물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며,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입증에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증거가 요구됨.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대 증거가 사라지거나, 추가적인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 때문에 사건을 입증하고 피학대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수사가 필수적

D.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도 반생명적 범죄일 뿐 아니라,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각종 성인 범죄 등 여러 형태의 인간폭력 및 반사회적 행동과 연관.[1] 동물학대에 대한 대응은 공공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

---

[1] 클리프턴 P.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책공장더불어, 2018), 54.

E. 그러나 현행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실제 현장에서 일선 경찰의 판단과 수사에 지침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인식 및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

2.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문제점

A. 내용의 부실

(1) 수사 과정에 따른 상황별 지침 부재

a. 수사 매뉴얼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의 수사에 있어 절차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매뉴얼은 구성에 있어서 동물학대 벌칙을 설명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음

b. 실제 사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수사시 유의사항'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침

[표1] 해외 매뉴얼과의 비교 : 기술방식 및 목차

구 분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뉴햄프셔주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Animal Cruelty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 User Manual
기술 방식	· 총 16쪽으로 구성 ·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률의 나열	· 총 50쪽으로 구성 (부록 제외) · 상황 대응 매뉴얼로서 단계별 구성 · 체크리스트 기술방식 적극 활용

목차	I. 현황 (2p) II. 동물학대 벌칙 개관 (2p) III.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벌칙 (6p) IV. 기타 특별법상 동물학대 벌칙 (3p) V. 수사시 유의사항 (3p)	매뉴얼 소개 및 활용방법 (3p) 1. 동물학대 관련 법률 (9p) 2. 동물학대 범죄의 유형 (7p) 3. 수사 및 기소 프로토콜 (22p) 4. 기소과정에서 고려사항 (8p) [부록] 활용 가능 추가자료 동물학대 조사 체크리스트 등 (42p)

※ 뉴햄프셔주 매뉴얼의 경우, 검찰 송치 후 기소 과정까지 포함하여 우리 매뉴얼에 비하여 내용 자체가 많으나, 경찰 수사 부분만 비교하여도 질적 차이가 큼

[표2] 해외 매뉴얼과의 비교 : 수사시 유의사항

구 분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뉴햄프셔주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내용 평가	· 총 3쪽으로 구성 · 피해동물 안전 최우선 등 원칙을 나열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론 부재	· 상황 전개 순서에 따라 세부적인 행동지침 마련
내용	V. 수사시 유의사항 (3p) 가. 단속 · 수사경찰의 자세 나. 피해 동물의 안전 최우선 원칙 다. 관련 법령 숙지 라. 학대 증거 수집 마. 언론 적극 대응 및 제2차 피해 방지	3. 수사 및 기소 프로토콜 (22p) - 초기 사건 접수 담당자의 역할 - 담당 수사관의 역할 - 안전수칙 - 조사시작 - 용의자와의 상호작용 - 사진 증거수집 - 수색영장 확보 - 학대 유형에 따른 조사 유의사항 및 제안 - 수의사와의 협업 등

(2) 내용의 구체성 부족

a. 매뉴얼 전반적으로 동물보호법 조항의 재기술에 그쳐, 굳이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개괄적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

[표3] 해외 매뉴얼과의 비교 :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 설명

구 분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뉴햄프셔주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기술 방식	· 동물보호법 조항을 그대로 기술	· 동물학대의 유형을 그 징후와 함께 설명하고 유형별 조사 권장사항을 언급
내용	(전문 발췌) 2.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 (법 제8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구 ·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1호)	(요약 발췌) 동물에 대한 물리적 폭력 동물을 반복적으로 구타하는 행위 자기방어행위나 훈련과 혼동되어서는 안됨 동물은 체모로 인해 멍자국을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의사 진단 필요 ※ 가정폭력 및 기타 폭력범죄와의 연결성 동물학대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력 및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음.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다른 범죄의 처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동물학대는 가정 내 폭력의 징후일 수 있음

[표4] 해외 매뉴얼과의 비교 : 사진증거 수집방법 설명

구 분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뉴햄프셔주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내용 평가	· 한 줄 기술에 그칠 뿐 아니라, 매뉴얼 작성 당시 동물유기는 과태료 대상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유기는 그 현장을 포착하기가 어려움에도 유기상황 촬영 등 비현실적 내용 구성	· 사진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 촬영 방법, 필요한 사진 등을 설명
내용	(전문 발췌) · 학대로 인한 상처의 크기, 정도 등을 자, 동전 등 비교도구를 사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유기의 경우 유기상황을 촬영	(요약 발췌) · 사진은 현장에서 수집된 물적 증거 외에 가장 중요한 증거 · 동물학대 사건 조사시 항상 카메라를 소지 (여분 배터리 및 백업 카메라 준비) · 사진은 전체(범죄가 의심되는 장소의 전체 장면), 중간거리(동물이 있었던 위치 주변), 클로즈업(동물 중심) 촬영이 필요 · 동물의 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촬영(오른쪽, 왼쪽, 전면, 후면, 윗면 등)해야 하며, 해상도가 중요 · 크기 비교를 위해 측정장치와 함께 촬영

B. 운영의 부실

(1) 정기적 매뉴얼 정비의 부재

a. ‘16. 10월 매뉴얼 마련 이후 동물보호법이 다섯 차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매뉴얼 정비 부재. 그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16년 10월 당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7. 3월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동물 유기행위 또한 과태료 대상에서 벌금으로 바뀌며 이제 경찰의 수사대상에 포함

(2) 매뉴얼의 현장 전파 미흡

a. 발간 이후 매뉴얼의 적극적 전파를 위한 노력 및 공식교육 부재. 대부분의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초기 지구대 출동이 이루어지나, 지구대 단위까지 전파되지 못한 상황

3.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방향

A. 상황대응 매뉴얼 형태로의 재구성

(1) 현행 매뉴얼은 수사 과정에 따른 지침의 형태 보다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일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형태

(2) 동물학대 사건에 있어서 신고 접수 후 일선 경찰의 출동과 신속한 수사가 중요한 만큼 수사단계별 상황지침의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임

B. 정기적 매뉴얼 정비와 공식 교육 마련

(1) 금번 개정 이후에도 변화하는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 및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기적인 매뉴얼 정비 필요. 특히 지속적인 사례 업데이트 중요

(2) 직장교육 내 생명감수성 향상 및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반영

4.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 필요사항

A.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구체화 및 학대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포함

(1) 현행 매뉴얼도 동물학대의 유형을 다루고 있으나, 법조항을 그대로 기술하는 형태.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방치 / 유기로 구분하여 학대유형별 징후 / 수사시 주의사항 / 수사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는 형태로 개정

(2) 특히 2021년 2월 12일부터 벌금으로 전환되는 유기와 소극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방치의 경우(제8조 제2항 제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보다 세부적인 설명 필요

(3)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학대유형별 학대 정황 및 징후가 기술된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일선 현장에서 활용 유도

[표5]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학대 유형	학대 정황 및 징후	체크란	
신체적 학대 (살해)	동물의 사체에 상해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동물의 토사물에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섞여있다.	예 □	아니오 □
신체적 학대	여러 군데의 부상, 발생(회복)시기가 다른 복수의 부상 및 뼈의 다중 골절 등 반복된 부상이	예 □	아니오 □

(상해)	발견된다.		
	동물이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마른 체형, 무기력하다.	예 □	아니오 □
	동물의 갑작스러운 지능 저하나 건강 악화, 순하던 성격이 난폭해지는 변화가 발견된다.	예 □	아니오 □
	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소·대변을 지리는 등 극도의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	예 □	아니오 □
	극도의 식탐이나 지자치게 배설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신체적 학대 (공통)	평소 보호자가 동물에게 과도한 체벌, 훈육을 자주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평소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 비명 또는 신음 등의 동물의 소리가 자주 들린다.	예 □	아니오 □
방임/방치	불충분한 사료와 신선한 식수가 부족하다.	예 □	아니오 □
	사육공간(시설)이 과도한 밀집 상태이거나 일상적 동작이 불가능한 크기이다.	예 □	아니오 □
	사육공간(시설)이 더럽고 배설물이 쌓여있다.	예 □	아니오 □
	평소 주거지 주변 악취가 심하다.	예 □	아니오 □
	날짜와 시간에 적합한 충분하고 적정한 대피 공간이 부족하다.	예 □	아니오 □
	사육장을 쌓으면 배설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등 바닥 없는 뜬장 사육 또는 위험한 공간(EX. 사육장의 와이어 돌출 등)에서 생활한다.	예 □	아니오 □
	발톱이 길어 살을 파고들 때까지 내버려 두는 등의 방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방치로 인한 신체 손상이 존재한다.	예 □	아니오 □
	동물의 상해, 질병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성적 학대	항문 또는 회음부 주변에 탈모나 찰과상, 찢어진 상처 등 외상성 손상이 있다.	예 □	아니오 □
	꼬리나 생식기 부위를 만졌을 때 과도한 예민 증세나 난폭한 모습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배뇨·생식관 내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진료 결과) 재발성 질염 또는 직장염, 비뇨기 감염 등의 증상이 있다.	예 □	아니오 □

B. 동물학대 대응 단계별 지침 마련

(1) 사건발생 ▸ 현장출동 ▸ 증거수집 ▸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등 일련의 대응지침 포함

(2) 초기 출동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적극적 수사자세 강조 필수적

관련 현장사례 : 신사동 햄스터 도살사건

[사건개요]
- 2017년 10월 24일 은평구 신사동에서 아버지 A가 딸들이 서로 싸우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보자 B가 키우던 햄스터 19마리 중 11마리의 목을 니퍼로 잘라 죽임
-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B는 112에 동물학대로 신고

[사건의 처리]
- 신고를 받은 관찰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관은 “햄스터는 재물이라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재물손괴로 사건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토록 종용
- 동물학대가 안 된다는 경찰의 말에 B가 결정을 못 하자 그대로 철수
- 가정폭력 등과의 개연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나 확인 절차 부재
- 경찰 철수 후 B는 남은 햄스터를 데리고 친구의 집으로 피신

※ 해당사건은 동물자유연대가 고발 후 구약식 명령이 내려짐

C. 증거 수집 가이드라인 포함

(1) 동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폭력이나 상해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다양한 사진 증거의 수집이 필요 (주변 환경,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 직접적 피학대 동물 뿐 아니라 학대자의 추가 동물 등)

(2) 특히 살해 사건의 경우,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한 사체 부검 필요 (현장에서 사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냉장보관토록 한 뒤, 동물위생시험소, 수의과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하여 일반 병리부검 진행 가능)

관련 현장사례 :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사건개요]
- 2019년 6월 25일 동네 주민 A가 주민들이 돌보던 길고양이 벽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풀숲에 유기, 그 다음날 두번째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하천 유기
- 주민 신고로 이틀 연속 근처 지구대에서 출동, 사건 접수

[사건의 처리]
- 첫 살해의 경우, 주민이 명확한 영상증거를 갖고 있었으나 두번째 살해는 정황상 의심될 뿐 증거가 없는 상황
- 경찰은 하천 현장만 확인하고 그대로 사체를 하천에 방치하고 철수
- 동물자유연대와 지자체 담당관이 사체 수습하여 부검 진행, 첫 살해와 유사하게 두개골 골절 및 함몰, 뇌출혈 확인

※ 해당사건은 동물자유연대가 고발 후 징역 4개월 판결

D.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에 대한 상세한 안내

(1) 피학대동물은 사건에 있어 학대의 피해자인 동시에 증거이기도 함. 따라서 초기에 최대한 신속히 피학대동물을 학대자와 격리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현행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과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

(2) 피학대동물의 격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의 동행 필요

(3) 격리 조치 후에는 피학대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통해 학대로 인한 상해, 질병 등에 대한 수의학적 소견 확보

E. 기타 유의사항

(1) 동물별 특성, 피학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유의사항

a. 강아지의 경우, 학대를 당했음에도 여전히 주인에 대해 친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주인에 대한 유대감이 학대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음

b. 고양이의 경우, 낯선 사람의 방문에 구석에 숨거나 울음소리 등이 작아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

c. 피학대 동물의 경우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

(2) 학대자(주인)의 예상되는 반응에 따른 유의사항

a.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위급한 동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등

5. 결어 :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A.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인식 제고

(1) 부실한 수사 매뉴얼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인식 및 관심 부재에서 비롯. 미국에서는 인간학대 및 동물학대 간의 관계는 자주 연관성으로 언급되며 많은 주에서 인간학대와 동물 학대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며[2], FBI는 2016년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주요 범죄로 규정하고 NIBR(국가사건정보시스템)에 동물학대를 4가지 유형[3]으로 분류하여 통계화를 시작

(2)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청 범죄통계는 동물학대 사건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음. 동물학대 사건의 급증에도 동물학대 발생 현황 및 범죄 추이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

(3) 경찰청 범죄통계에 동물학대를 별도 분류하여, 형사정책 및 사회 치안 정책 개선을 위한 기본자료 확보 필요

B. 실효성 있는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의 개정

(1) 매뉴얼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실제 경찰의 현장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상황별, 단계별 판단 기준 및 대응방침 필요

(2) 수사 매뉴얼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동물학대사건 현장에서의 대응역량 강화 필요

C. 매뉴얼의 확산 및 교육

(1) 2017년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제작된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은 일선 서에 CD 형태로 배부. 사건에 초동대응을 하는 지구대에는 미배부

(2) 매뉴얼의 개정 및 보완만큼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일선 현장에 대한 보급과 교육 역시 병행되어야 함.

D.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 함태성, 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미국헌법연구 26(2), 2016), 337-378.
[3] simple/gross neglect, intentional abuse and torture, organized abuse/animal fighting, animal sexual abuse

(1) 사건 초기 동물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피해자인 동시에 증거인 동물의 격리조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동물보호감시원과의 동행하거나 원활한 업무협조가 요구됨.

(2) 수의사의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의학적 소견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협조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클리프턴 P.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18.

함태성. 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미국헌법연구 26(2), 2016.

State of New Hampshire. Animal Cruelty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 User Manual, 2012.